

사천시청밧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제55호
----------	------------

제출연월일 2006. 10. 1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청밧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 」)표시
(안 제1조)

나. 동서동사무소 소재지를 서동 303-1번지에서 서동 272-4번지로 변경
(별표와 같음)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제109회 - 총무위 부록)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청밧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청밧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청 밧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303-1번지”를 “서동 272-4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별표]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u>303-1</u>번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별표] 동서동의 소재지 중 서동 <u>272-4</u>번지</p>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7호]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1994.12.20, 1999.8.31, 2005.3.24>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6호]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1994.7.6, 1995.7.1, 2006.6.29>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8호, 시행일 2005.9.25]